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정책브리핑

2017년 5월 30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5.29.(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7. 5. 29.(월)	담당부서	제품시장관리과
담당과장	오경희 과장(043-870-5420)	담 당 자	강민구 사무관(043-870-5427) 김용득 연구관(043-870-5447)

휴대용 선풍기내 충전지의 안전확인신고 여부 등 조사결과
- 10개 충전지 중 3개 제품이 미신고 제품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**(원장 정동희)은 최근(5. 10.) 경기도 파주에 소재한 초등학교에서 휴대용 선풍기 발화사고가 발생함에 따라, 5. 11.부터 시중에 유통중인 휴대용 선풍기 제품을 확보해 충전지에 대한 안전확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했다.

○ 리튬전지를 포함한 충전지는 **'16년까지**는 에너지밀도 **400Wh/L 이상**(고밀도)인 제품에 한해 **안전확인신고 대상**이었으나, 전자제품에서 충전지의 사용이 증가하고 화재사고 등이 발생함에 따라 국표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**'17. 1. 1.부터 400Wh/L 미만**(저밀도)의 충전지까지 안전확인신고 대상을 확대하여 관리하고 있다.

- 이에 따라 **17.1월 이후** 제조·수입되는 **저밀도 충전지**도 안전확인을 받은 이후 판매하여야 하며, 안전확인을 받지으면 **불법제품**이다.

□ 이번 조사를 위해 시중에서 무작위로 휴대용 선풍기 10개 제품을 구입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○ 10개 제품에 사용된 충전지(리튬전지) 중 **7개가 고밀도** 제품인 반면, **3개가 저밀도** 제품이었다.

- 이는 17년 1~5월중 안전확인을 신고한 총 **640개의 충전지** 중 **31%인 201개 전지**가 저밀도 제품인 점과 유사한 비율임

○ 10개 제품 중 **3개 제품***에 사용한 충전지(리튬전지)가 **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제품**을 확인했으며, 이 중 **2개 제품이 고밀도 제품**이고 **1개 제품이 저밀도** 제품이다.

* 당초 10개 제품 중 5개가 미신고 제품이었으나, 조사기간(5.11~26) 중 2개 제품이 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하였음

○ 10개 제품에 사용된 리튬전지 중 **고밀도 1개 제품**이 **화재 유발 위험**과 관련한 외부단락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*했으며, 이는 **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제품**이다.

* 화재를 유발할 위험이 높은 과충전, 외부단락 등의 항목에 대한 시험진행

□ 조사결과 가격이 저렴한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지에 대해 안전확인신고 없는 불법제품이 사용·판매되고 있는 사실과 **안전확인 미신고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점**을 확인했다.

□ 국표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불법제품에 대한 **시장감시를 강화**하고 충전지를 사용하는 **여타 품목**까지 안전성 **조사**를 **확대**할 계획이다.

○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**충전지를 사용한 휴대용 선풍기**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관한 의견 제시 기회를 거쳐 **관할 지자체에 수거·파기 등 행정처분**을 요청하기로 했다.

* 안전기준 미충족 제품은 국표원이 리콜조치 가능하나, 동 제품이 안전확인 미신고 제품에도 해당된다는 점에서 지자체와 협의하여 처리할 예정임

○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휴대용 선풍기에 대해서는 제품안전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하는 **소비자단체** 및 **한국제품안전협회와** 협력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중 충전지의 안전확인 미신고 여부에 대해 **6월부터 3개월 간 점검**하고, 특히 저밀도 제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한다.

○ 또한, 충전지를 사용하는 **여타 기기***에 대해 6월부터 순차적으로 **안전성 조사**를 실시해 다양한 제품에 사용하는 충전지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결함보상(리콜조치)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.

* LED 랜턴, 전자담배, 블루투스 스피커 등

□ 국표원은 충전지 제조자에 대해 **'17. 1. 1.부터** 에너지 밀도에 상관없이 **모든 충전지가 안전확인신고 대상**임을 숙지하고, 충전지를 사용하는 제조자에 대해 안전확인 신고한 충전지만을 사용하도록 요청했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강민구 사무관(☎043-870-5427) 및 김용득연구관(☎043-870-544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